

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김 언 태

나. 제안이유

- 시가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격자에게 경비부과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한 준치목적이 상실되어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 제100조에 의거하여 농지개량사업 수혜자에게 사업 비용 부과를 위해 제정되었으나, 1995.12.19.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